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

베스트그린요양원

입소자보호와 운영관리

제 3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1. 입소정원은 83인으로 한다.
2.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제 3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- ① 시설과 이용자 (입소자)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가,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비급여 항목별 비용

2. 계약기간

- 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. 단, 노인복지법 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가. 계약기간은 입소 시 제출한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만료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결정한다.
-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-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.

202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금액 (31 일기준)

2026.01.01

1등급 1일당		93,070 원
---------	--	----------

합계금액 2,885,170

일반 (20%)		경감 (12%)		경감 (경감 8%)	
공단 80%	2,308,140	공단 88%	2,538,950	공단 92%	2,654,360
본인 20%	577,030	본인 12%	346,220	본인 8%	230,810
식사,간식	409,200	식사,간식	409,200	식사, 간식	409,200
이미용비	-	이미용비	-	이미용비	-
본인부담총액	986,230	본인부담총액	755,420	본인부담총액	640,010

2등급 1일당		86,340 원
---------	--	----------

합계금액 2,676,540

일반 (20%)		경감 (12%)		경감 (경감 8%)	
공단 80%	2,141,240	공단 88%	2,355,360	공단 92%	2,462,420
본인 20%	535,300	본인 12%	321,180	본인 8%	214,120
식사,간식	409,200	식사,간식	409,200	식사, 간식	409,200
이미용비	-	이미용비	-	이미용비	-
본인부담총액	944,500	본인부담총액	730,380	본인부담총액	623,320

3~5등급 1일당		81,540 원
-----------	--	----------

합계금액 2,527,740

일반 (20%)		경감 (12%)		경감 (경감 8%)	
공단 80%	2,022,200	공단 88%	2,224,420	공단 92%	2,325,530
본인 20%	505,540	본인 12%	303,320	본인 8%	202,210
식사,간식	409,200	식사,간식	409,200	식사, 간식	409,200
이미용비	-	이미용비	-	이미용비	-
본인부담총액	914,740	본인부담총액	712,520	본인부담총액	611,410

4. 신원인수인(보호자,보증인)에 관한 사항

-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입소자)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.

▶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·의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▶ 입소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▶ 입소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▶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

▶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5. 계약의 해제

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 -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 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안전 및 생활에 위험이 발생할 때.
 -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, 시설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 -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제 3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 또한 수급자와 보호자도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변경이나 비용 변경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즉시 시설에 고지해야 한다.
 -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 -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 - ③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 - ④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급여비용
2.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 -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 -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.
 - ④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.

제 35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며 입소비용(본인부담금, 비급여) 이외의 추가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.
- 1. 일상생활지원서비스
 - ① 식사관리, 배설관리, 목욕관리, 구강관리, 두발관리, 손·발 관리, 세면관리, 회음부관리, 옷 갈아입히기, 체위변경, 수면관리, 이동 요양
- 2.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- 일상편의대행, 의사소통지원, 여가지원(프로그램서비스)
- 3.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
 - ① 건강관찰 및 확인, 투약관리, 치매관리, 간호 및 처치, 호스피스, 응급구호, 외래진료 및 입·퇴원관리, 예방관리, 협약기관 진료.

4. 재활치료 지원서비스

① 일상생활동작훈련, 물리치료, 신체기능훈련, 작업치료 및 인지, 정신기능훈련

5. 재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교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나 부담한다.

제 36조 특별한 보호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-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

1.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

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가.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
나. 대체할 만한 케어 방법이 없거나,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

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·정신적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
③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,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,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,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,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.

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.

제 3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

-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①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
②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④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2. 촉탁의 진료에 관한 사항

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.

②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
③ 촉탁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3.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.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 - 나.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 - 다.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-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 - 가.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 - 나.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.
-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 - 가.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.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 - 나.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.
 - 다.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.

4.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-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.
-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제 3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
-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.
- ② 입소 시 반입금지 품목(라이터, 가위, 칼, 바늘 등)을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반입 금지한다.

제 3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- 가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나.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다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가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

나. 입소자가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다.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